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

2014년 9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 9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4. 5.2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건설사업 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

○ 건설기술용역업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나.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사항 반영

○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추가(안 제3조제1항제9호)

다. 기타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변경(안 제1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로 변경(안 제10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로 변경(안 제15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로 변경(안 제1조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등)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식)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2014. 9. 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 9.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개정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3.5.22.)되어 금년 5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실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안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 설>	제3조(기능) ① ----------.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이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주체가 불분명하였던 것을 분명하게 하는 한편, 심의대상도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보다 명확성을 기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여겨짐.

○ 또한, 용역사업 발주 시 용역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 및 입찰공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향후,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 사항 반영 (안 제3조제1항제9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제3조(기능) ① ----------. 9.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이는 제3조제1항제9호 신설의 경우 201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며, 당시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심의 대상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공사

중요도와 관계없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 금번 개정안에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안전관련 주요공사까지 확대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설계심의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조례에서 확대 규정한다 하여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설계변경 최소화와 예산절감의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 됨.

□ **기타 개정사항**

○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는? (조상호 위원)

답변) 250명임.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질의) 민간위원 선정방법은? (조상호 위원)

답변) 추천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계, 용역사 등을 고루 안배 선정함.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질의) 설계심의 대상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심의 대상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이석주 위원)

답변)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은 소규모 교량, 복개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의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21조제4항제1호”를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9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을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9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을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영 제21조제4항제4호”를 “영 제19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위촉하여로 한다. 구성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9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을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으로, “요구서”를 “변경요구서”로 한다.

제10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40조의2”를 “법 제79조”로 하고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제2조(구성) (생략)	제2조(구성)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9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	제3조(기능) ①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

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5.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 설〉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
7.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9.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회의) (생략)	제4조(위원회의 회의) (현행과 같음)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② ---------- ---------- ---------- ----------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로 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 ---------- -------- **위촉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생략)**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 ⑦ **(생략)**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 ⑤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영 제20조제1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생략)**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 ---------- ---------- ---------- ---------- ---------- ---------- ----- **변경요구서**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생략)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 ---------- ---------- ---------- ----------.
제11조 ~ 제14조 (생략)	제1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5조(심의수수료) ① ------- 법 법 제79조---------- ---------- ---------- ---------- 별표 1----------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조례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건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	○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심의	30,000,000원 이상
	○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43,000,000원 미만
	○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2,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조례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5항 의 심의사항	○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심의	30,000,000원 이상
	○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43,000,000원 미만
	○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2,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